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잔류 예방과 위반시 조치

• 잔류물질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과 같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식품에 잔류하는 소량의 물질을 잔류물질(Residues)라 합니다. 잔류물질에는 사용한 원물질과 동식물체내에서 분해 또는 대사되어 잔류하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 항생제 잔류예방

1.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꼭 지킵시다.
2. 농가에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지정을 받읍시다.
3. 출하 전 일정기간 항생제가 없는 말기(출하기) 배합사료를 급여합니다.

• 잔류허용 기준 설정

1.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동물용의약품은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동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허가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3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합니다.

• 잔류허용 기준 위반 농가

1. 잔류위반농가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잔류허용기준 기준 초과 가축, 계란 등 생산물을 출하한 농가는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어 보다 엄격한 규제 검사를 받게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규제검사 시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 폐기 규제검사 결과 기준 초과 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모두 폐기되므로 해당 농가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법규와 위반시 벌칙 기준

관련법	위반 내역	벌칙/과태료	비고
축산물위생 관리법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시	벌칙 : 형사 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소 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	벌칙 : 형사 고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업소 등
약사법	무허가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벌칙 : 형사 고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판매업소 등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이하 (1회 30만원/ 2회 45만원/ 3회 70만원)	농가
농약관리법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 (1회 40만원/ 2회 60만원/ 3회 80만원)	농가
사료관리법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업소 등

2.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처방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 동물용 항생항균제, 동물용 백신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등 97개 성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착유 중인 소나 산란 중인 닭에는 항생제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착유 중인 소나 알을 낳고 있는 닭에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우유나 계란으로 이행되어 잔류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 모든 항생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줌 등을 통해 몸밖으로 배출됩니다. 항생제를 투여했다면 휴약기간이 지난 후 도축장에 출하하면 됩니다.



항생제 내성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항생제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체 방어능력으로 자신이 생산한 항생제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체 방어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

• 항생제 내성이 발생되는 원인



•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5가지 수칙

1. 정확한 진단과 항생제 사용을 위해 꼭 수의사와 상담하십시오.
2. 질병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축종과 질병별로 적합한 항생제를 사용하십시오.
4.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지침을 따르고, 사용내역을 기록하십시오.
5. 출하 전 일정기간 항생제가 없는 사료를 급여하세요.

